



세무뉴스

기업의 이전가격 조세관리에 대한 지침

24.2.2017 일자 제 20/2017/ND-CP 호 시행령

3 월 2017 년

베트남 정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준수 안내하는 24.2.2017 일자 제20/2017/ND-CP호 시행령을 (“제20호 시행령”)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동 시행령은 2017년 5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이 세무뉴스에서 제 20 호 시행령의 주목할 만한 변경, 납세자가 이전가격 (“TP”) 준수 관련 요구사항 및 사업모델에 맞춰서 조정해야 할 사항을 포함해서 아래와 같이 요약드리겠습니다.

부분	내용	페이지
1	특수관계자 정의 수정	1
2	세무 / TP 감사 동안 비교분석 및 TP 조정에 대해 주목할만한 점	4
3	법인 소득세 목적으로 한 공제 불가능한 비용	4
4	TP 문서 및 신고서 면제된 경우	5
5	신규 TP 신고 양식 소개	6
6	규정준수 및 보고 제출기한	6
7	이전가격관리에 대한 조세당국의 권리	7
8	일반 평가	8
부록 - 제 20 조 시행령에 첨부된 양식의 리스트		9

제 1 부: 특수관계자 정의 수정

“특수관계자” (“RP”) 라는 용어는 지분 투자 또는 다른 당사자를 통한 투자로 관리 및 통제 측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제 20 조 시행령에서 이 관계를 10 개의 종류로 분류하였습니다 (제 66 호 시행규칙에서 13 개의 종류로 분류됨). 제 66 호 시행규칙과 비교에 중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참고: 순서는 제 66 호 시행규칙과 제 20 호 시행령의 순서로 반영됩니다)

제 1 표

제 66 호 시행규칙	제 20 호 시행령
직접 특수 관계자 - 소유권	
<p>소유자가 20%이상으로 투자하는 경우 2 당사자가 특수관계자로 간추됩니다. 구체적으로:</p> <p>a. 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의 소유주에 최소 20%의 투자 자본금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p> <p>b. 두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 3 의 기업의 최소 20%의 투자 자본금을 각각 보유하는 경우; 또는</p> <p>c. 제 3 의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각 2 기업의 최소 20%의 투자 자본금을 보유하는 경우</p>	<p>자본 투자의 한계율이 25%로 증가됩니다. 구체적으로:</p> <p>a. 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의 소유주에 최소 25%의 투자 자본금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p> <p>b. 두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 3 의 기업의 최소 25%의 투자 자본금을 각각 보유하는 경우; 또는</p> <p>(c) 조건은 삭제되었습니다.</p>

간접 특수 관계자- 차입금	
<p>20%이상으로 보증 또는 자본조달하는 경우 2 당사자가 특수관계자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p> <p>e.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여하거나 보증해 주며 그 대여금이 차용 기업의 투자자본가치의 20%이상 차지하거나 그 차용 기업의 중기 & 장기 총 차입금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p>	<p>보증 또는 자본조달 한계율이 25%로 증가됩니다, 구체적으로:</p> <p>d.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여하거나 보증해 주며 (특수 관계자에 의해 보증된 제 3 자의 대출 또는 유사한 재무거래를 포함) 그 대여금이 차용 기업의 투자자본가치의 25%이상으로 차지하거나 그 차용 기업의 중기 & 장기 총 차입금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p>
간접 특수 관계자 - 사업 관계	
<p>1 기업은 다른 기업의 총 매출 또는 매입가치의 50% 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간주됩니다:</p> <p>j.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무형자산 또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생산/영업하고 무형자산/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용을 상품원가의 50%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p> <p>k. 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의 매출상품 생산/판매를 위해 매입 상품/원자재의 50%이상(고정 자산 감가 상각비 제외) 제공하는 경우</p> <p>l.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50%이상(각 제품별로 계산)의 제품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경우</p>	<p>이러한 정의가 제거되었습니다.</p>
<p>m. 계약상 사업협력 합의에 도달한 2 개의 기업들이 특수관계자로 간주됩니다.</p>	<p>이러한 정의가 제거되었습니다.</p>
제 20 호 시행령에 새로 추가된 경우	
	<p>제 20 호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두 기업이 특수 관계자로 간주됩니다:</p> <p>i. 한 개인에 의해 투자된 자본을 통해 제어되거나 직접 영업관리 되는 하나 또는 수많은 사업; 또는</p> <p>k. 한 기업의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결정에 의해 관리 또는 제어되는 경우</p> <p>조건 k 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일치하지만 현재 상세한 지침이 없으므로 다양한 이해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추가하며, 50%의 매출 또는 매입 등의 사업관계에 대한 정의를 제거하는 것은 다른기업으로</p>

제 66 호 시행규칙	제 20 호 시행령
	부터 상당한 매입/매출비율이 발생한 기업에 조세당국의 challenge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2 부: 세무 / TP 감사 동안 비교분석 및 TP 조정에 대해 주목할만한 점

제 20 호 시행령은 제 66 호 시행규칙과 비교에 TP 조정 및 비교분석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핵심 변경은 아래에 요약됩니다:

제 2 표

제 66 호 시행규칙	제 20 호 시행령
<p>비교대상 회사</p> <p>납세자가 비교대상을 선택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arm's length 을 평가하기 위해, 조세당국이 요청 시 확인이 가능한 합법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대상 정보 선택시 지역적인 제한이 없었습니다.</p>	<p>비교대상회사 선택은 아래와 같이 제안된 데이터의 우선순위로 (및 핵심차이의 조정에 따라, 해당된 경우) 실행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납세자의 내부 비교정보 (ii) 같은 국가 & 영토이내에 위치하는 비교정보 (iii) 유사한 사업부문 & 경제발전 조건을 가진 구역에 비교정보
<p>조정 가치</p> <p>비교분석에 TP 조정가치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p>	<p>비교분석 진행하는 동안, TP 조정가치는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방법 -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이 적용 가능한 경우) 독립적인 회사의 유사한 거래가격 또는 (기타 방법이 적용된 경우) 독립적인 비교대상회사들의 사분위값 평균의 중간값이 적용됩니다.</p>
<p>TP 조정 간주</p> <p>세무/TP 감사에 납세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조정되는 가치가 제 66 호 시행규칙에서 규정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가격/이익 조정을 위해 가장 적절한 가치가 조세당국에 의해 결정된 기준 시장 가격범위의 중간가치보다 낮지 않은 가치로 적용됩니다. ✓ 구매가격 조정을 위해 가장 적절한 가치가 조세당국에 의해 결정된 기준 시장 가격범위의 중간가치보다 높지 않은 가치로 적용됩니다. 	<p>제 20 호 시행령에 따르면 조세당국은 납세금액을 간주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정확한 조정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TP 조정가치를 위한 비교분석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중간가치가 세무/TP 감사의 경우에 납세금액을 간주하기 위해 최소한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p>

--	--

제 3 부: 특수관계자에게 결제비용이 법인소득세 (“CIT”) 목적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제 20 호 시행령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바탕으로 CIT 목적인 비공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특수관계자와 관련비용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 3 표:

No.	특수관계자와 관련비용의 종류	CIT 목적으로 한 비공제된 특수관계자와 관련 비용
1	유/무형자산 사용 또는 기타 용역의 대가로 특별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특수 관계자가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없음; ii. 특수 관계자가 생산, 사업활동이 있지만 특수관계자의 자산, 근로자 규모 및 생산, 사업기능이 거래가치에 비례하지 않음; iii. 특수 관계자가 납세자에게 제공한 자산, 화물, 용역에 대한 권리, 책임이 없음; 및 iv. 특수 관계자가 CIT 에 과세하지 않은 국가 또는 영토이내에 설립되어 납세자의 사업활동에 매출 & 가치를 창출하지 않음
2	용역을 받기 위해 특수 관계자에게 결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특수관계자에 의해 제공된 용역은 다른 특수관계자에 이익 &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만 함; ii. 특수관계자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용역; 한 종류의 용역이 여러 특수관계자에 의해 제공된 중복용역으로써 납세자에게 제공된 부가가치를 확정할 수 없음; iii. 그룹 회원에 의해 납세자에게 이익으로 제공된 용역; 및 iv. 특수관계자가 용역에 가치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 의한 중개인을 통해 용역에 제공된 추가비용

제 20 호 시행령은 이자비용의 공제 한도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납세자의 당기에 발생된 공제 가능한 총 이자비용은 EBITDA(사업활동으로 인한 순이익에 대출이자비용과 당기 상각비용의 총금액의 합계)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신용기관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이 적용된 납세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TP 보다는 CIT 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TP 측면에서 대출이자의 한계를 사용하여 이익을 베트남 영토 밖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부채비율 및 특수관계자와 독립자간의 대출 비율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제 4 부: TP 문서 및 신고서 면제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서류준비/신고가 면제된 것으로 제 20 호 시행령이 제안합니다.

제 4 표

완화된 요구사항	면제된 경우
<p>제 1 호 양식에 따른 Section III 및 Section IV 의 신고 면제</p>	<p>i. 납세자가 베트남에서 CIT 과세된 특수관계자와 거래만 있음; 및</p> <p>ii. 양측은 과세기간동안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제혜택을 제공받고 있지 않음</p>
<p>TP보고 준비 면제 (TP Form은 제출되어야 함)</p>	<p>i.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발생하지만 과세당기동안 총 판매매출이 VND50bil 를 초과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와의 총 거래가치가 VND30bil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p> <p>ii.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APA”)를 서명한 납세자가 APA 와 관련 법적규제에 따른 연간보고를 제출한 경우(APA 범위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만 적용됨)</p> <p>iii. 납세자가 간단한 사업활동을 진행하며 무형 자산의 개발 및 이용으로 인한 이익이 없으며 VND 200billion 이하로 판매매출이 발생하고 아래와 같이 분야에서 영업이익(이자비용 및 세액 차감 전 영업이익/순매출)을 적용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 5% 이상; - 생산: 10%이상; - 가공: 15%이상

제 5 부: 신규 TP 양식 소개

특수관계자간 사업거래에 시장가격을 확인을 안내하는 제 156/2013/TT-BTC 호 시행규칙 (“제 156 호 시행령”)에서 요구된 TP 신고양식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필요한 4 개의 양식을 제 20 호 시행령이 제안하였습니다. 납세자가 다음과 같이 포함하여 TP 서류를 준비 & 보류해야 합니다:

- ❖ 제 1 호 양식에 따른 제 03/TNDN 호 CIT 정산신고서와 함께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정보
- ❖ 제 2 호 양식에 따른 현지보고
- ❖ 제 3 호 양식에 따른 그룹정보 보고
- ❖ 제 4 호 양식에 따른 최종 모회사의 초국가적인 이익보고 신고 (*)

() 제 20 호 시행령에서 정의된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인 그룹의 법인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기타법인에 의해 소유되지 않은 법인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모회사의 연결 재무 제표는 전 세계의 다른 법인의 재무제표의 연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4 호 양식은 아래의 경우에만 제출되어야 합니다:

- ✓ 납세자가 베트남에 최종모회사이며 그룹의 당기 총매출이 VND 18 thousand billion 초과하는 경우
- ✓ 납세자의 최종모회사가 해외에서 위치하며 최종모회사가 이익보고를 해외의 조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가 그 보고의 사본을 제 4 호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가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서류, 법적근거와 최종모회사의 현지법근거 등을 문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각 양식의 자세내용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제 6 부: 규정준수 및 보고 제출기한

제 20 호 시행령의 지침에 따르면 TP 서류의 준비-보류-제출일정이 아래와 같이 규정됩니다:

- 연간 CIT 신고서를 제출하기전에 TP 서류를 준비함
- TP 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한 일정:
 - ✓ 세무 감사시, TP 서류가 조세당국에 의해 요청된 날짜로 15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 세무조사전 사전 협의기간 동안 TP 서류가 조세당국에 의해 요청된 날짜로 3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1 번의 15 일 연장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연도를 한 개의 TP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 7 부: 이전가격관리 에 대하여 조세당국의 권리

조세당국은 다음 규칙에 따라 세금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회계장부, 영수증, 증빙서류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매출, 비용 또는 과세소득의 간주는 제 20 호 시행령에 규정된 비교분석 규칙, 이전가격 방식 및 특수관계간의 거래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수해야 합니다.
- **기타 경우:** 세금간주는 회계장부, 영수증, 증빙서류를 충분히 유지 하지 않은 기업 또는 조세위반 행위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세당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세금신고서를 위한 가격, 이익률, 이익배분율 및 납세자의 과세 소득 또는 CIT금액을 간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 납세자가 제20호 시행령에서 규정된 제01호 양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신고함;
- 납세자가 제20호 시행령에서 규정된 제02호 및 제03호 양식에 따라 TP서류의 정보를 충분하지 않게 제공하거나 비교분석으로 사용된 TP서류, 데이터,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없음;
- 특수관계자간의 가격신고 & 비교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신뢰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정보를 사용함;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조정된 가격을 신고함; 또는 불법적인/무효한 서류/데이터/증거를 근거함;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적용된 가격, 이익율, 이익배분율을 확정하기 위해 사용된 정보원을 확인 할 수 없음;
- 이전 가격 규정 위반 행동이 있음.

제 8 부: 일반 평가

제 20 호 시행령은 기존 규정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며 OECD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대응(BEPS)에 맞춰 TP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상세지침을 제공합니다. 준수의 측면에서 제 20 호 시행령은 현지납세자와 모회사가 허락된 기간동안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조세당국에 제출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데이터가 현지 레벨에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4 부에서 면제된 사항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 20 호 시행령에 지침의 조건을 부응하기 위해서 당사의 사업모델을 재평가하거나 TP 규정준수를 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모델을 검토/재평가 – 신규규정에 따라 변경이 있는지 여부? 기존 사업모델을 변경시 조세측면에서 선호가 있는지 여부
- 신규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와 계약을 검토함.
-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결제의 성격을 검토
- 세금면제 한계를 적용할 가능성 검토
- 신규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와 관계를 재검토
- 연간 TP 준수가 적시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검토

제 20 호 시행령은 2017.5.1 부터 발효함으로 회계연도가 2017.3.31 일에 마감하고 2017 년 6 월말까지 정산신고 해야 한 납세자는 기존 규정의 지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세당국으로 부터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부록 - 제 20 조 시행령에 첨부된 양식의 리스트

1. 제 01 호 양식 -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정보

제 01 호 양식은 제 156 호 시행규칙에 따른 TP 신고양식을 바탕으로 제안됩니다. 다만, 제 01 호 양식은 다음과 같은 추가정보를 요청합니다:

- **제 1 부 - 명칭, 국가, 세금코드 및 특수관계의 종류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
- **제 2 부 - 신고의무가 면제되며 TP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가 제 01 호 양식의 제 III 부 및 제 IV 부에서 신고가 면제된 상태를 신고하며 위에서 언급된 TP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제 3 부 - 특수관계자간 거래신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신고에 대한 요구 외에 납세자가 대납금/ 매출분배를 제 12 호 칼럼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13 호 칼럼에서 납세자는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APA 적용범위에 맞는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 **제 4 부 - TP 조정후 사업결과:** 이는 제 20 호 시행령의 새로운 요청입니다. 제 IV 부에 따르면 납세자가 3 개의 산업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i) 생산, 무역, 서비스; (ii) 은행 및 신용; (iii) 증권, 기금관리. 산업에 따라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의한 손익 및 제 3 자와 거래에 의한 손익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의한 손익은 TP 서류와 APA 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2. 제 02 호 양식 - 현지보고에 필요한 정보, 서류의 목록

- 조직원 및 관리구조, 사업활동, 사업전략, 주요경쟁자 등 납세자에 대한 일반정보
- 특수관계자와 중요한 거래에 대한 정보: 거래의 종류, 거래 설명, 특수관계자간의 관계, 기능분석, TP 방법론, 중요한 가정; 진행한 비교조정, 특수관계자와 계약/합의서 등.
- 재무정보: 납세자의 신고한 당기의 재무제표, 비교분석에 사용된 관련 재무데이터, 3 년이상으로 적자인식한 이유에 대한 설명 등.

3. 제 03 호 양식 - 글로벌 리포트에 필요한 정보, 서류 목록

- 그룹의 자회사 소유구조, 지리적인 위치와 같은 그룹의 운영구조
- 사업이익의 창출채널, 매출이 가장 높은 5 개의 상품/용역 및 그룹의 매출에 5%이상으로 기여하는 모든 상품 및/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망 (상품/용역의 주요 지리적인 시장, 핵심한 용역 계약서에 대한 정보 등.
- 연구개발 (R&D)센터의 위치, 무형자산 리스트 및 중요한 계약서 등 그룹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
- 그룹의 재정 배분 계획, 이전가격정책 등 그룹내부의 재무활동에 대한 정보.
- 신고한 연도의 연결 재무제표, 특수관계자의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이익에 해당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된 세율, APA 합의서 등 그룹의 사업결과 및 조세채무에 대한 정보.

4. 제 04 호 양식 - 초국가적인 이익보고 신고

- 그룹의 특수관계자 및 제 3 자의 매출, 발생하고 납세된 조세채무, 등록자본, 축적된 이익, 직원 수 및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제외) 유형자산 등 포함한 그룹의 영업이익 분배, 거주한 국가에 과세 및 사업활동에 대한 총괄정보
- 거주한 국가에 따라 그룹의 자회사의 리스트

* * * *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요

연락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요.

Thomas McClelland
Tax Leader
+84 (8) 3910 0751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4) 6268 3568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4) 6268 3568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8) 3910 0751
hoangphan@deloitte.com

Dion Thai Phuong
Tax Partner
+84 (8) 3910 0751
dthai@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Director
+84 (4) 6268 3568
handinh@deloitte.com

Joy Mukherjee
Tax Director
+84 (8) 3910 0751
joybmukherjee@deloitte.com

Korean Service Group: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4) 6288 3568
mbui@deloitte.com

Vo Thai Hoa
Audit Partner
+84 (8) 3910 0751
hvo@deloitte.com

Lee Young Dong
KSG S.Manager
+84 (8) 3910 0751
youngdlee@deloitte.com

Truong Thu Hang
KSG Executive Assistant
+84 (4) 6288 3568
htruongthu@deloitte.com

Website: 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본 세무뉴스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정보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딜로이트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딜로이트 투슈 토마츠 (Deloitte Touche Tohmatsu)

딜로이트 투슈 토마츠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 걸쳐 회계감사, 세무자문, 컨설팅 및 재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전문 서비스 조직입니다. 1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딜로이트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한 기술적, 관리적 운영체계를 통해 고객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정부 및 공공기관, 다국적 기업들의 80% 이상이 딜로이트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에서는 140여 개국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16만 9천여 명의 전문가들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딜로이트 베트남회계법인 (Deloitte Vietnam Company Ltd.)

딜로이트 베트남회계법인은 세계 최대의 회계 컨설팅 그룹 중 하나인 딜로이트 투슈 토마츠(Deloitte Touche Tohmatsu, DTT)의 베트남 회원사입니다. 전 세계 딜로이트 회원사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Knowledge base와 Resources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 제조업, 정보통신, 소비재산업, 에너지산업, 생명과학, 공공부문 등 각 산업별 특성에 맞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기업리스크 자문 등 영역별로 전문화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딜로이트 베트남회계법인의 800여 명의 임직원은 세계화된 무한 경쟁환경 속에서 고객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약을 위한 발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의 기대보다 한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